

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학술활동지원비 운영 지침

제정 2014.04.28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금오공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일반대학원 석사 · 박사 과정 재학생 또는 수료 후 등록생(이하 “대학원생”이라 한다)의 연구력 향상을 위한 학술활동지원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학술활동지원비의 종류) 대학원생의 학술활동지원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학원생 SCI급 논문 지원 : 대학원생이 SCI급(SCI, SSCI, SCIE)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
2. 대학원생 우수논문 장려금 지원 : 대학원생이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지나 국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구두로 발표한 경우

제3조(지원대상 및 지원범위)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일반대학원 컨설팅학과 박사과정 재학생은 제외한다.

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

1.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
2.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
3. 일반대학원 석·박사 통합과정 재학생
4. 일반대학원 수료 후 등록생(미등록 수료생 제외)

②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학원생 SCI급 논문 지원 : 대학원생이 논문의 저자로서 소속이 본교로 명기된 국내·외 SCI급(SCI, SSCI, SCIE)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
2. 대학원생 우수논문 장려금 지원 : 대학원생이 논문의 저자로서 소속이 본교로 명기된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지나 국외학술지에 게재하거나 구두로 발표한 논문

③ 대학원생 우수논문 장려금 지원은 1인 연 1회에 한한다.

제4조(지급기준) ① 당해년도에 게재(일) 및 발표(일)한 논문에 한한다.

② 대학원생 학술활동지원비는 별표 1과 같다.

③ 타 기관 또는 타 재원으로 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.

④ 휴학생, 제적생 및 미등록 수료생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신청방법) 논문 게재 및 발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지정 기일 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.

① 대학원생이 SCI급 논문 지원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대학원생이 우수논문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원비 및 지급시기) ① 지원비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과 같이 지급한다.

② 지급시기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한다.

제7조(대상자 선정) 대학원생 학술활동지원비 지급대상자의 선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.

제8조(지원비 반납) 학술활동지원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해 지원비를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.

제9조(기타사항) 본 지급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14.04.28)

1. (시행일)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대학원생 학술헌동지원비 금액

1. SCI급 논문 지원

(단위 : 원)

등재구분	저자구분	1인 단독게재	2인 공동게재	3인 공동게재	4인 이상 공동게재
SCI급 (SCI, SSCI, SCIE)	주저자	500,000	300,000	200,000	150,000
	공동저자	-	200,000	150,000	100,000
☞ 주저자는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를 말한다. ☞ 제1저자 및 교신저자가 2인이 모두 본교 대학원생일 경우 각각 [(주저자 지원금 + 공동저자 지원금)/2] 금액을 지원한다. ☞ 저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저자, 공동저자 구분 없이 (단독 게재금/저자수) 금액을 지원하며 천원미만은 절사한다.					

2. 우수논문 장려금 지원

가.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지에 게재하거나 구두로 발표한 논문 : 100,000원

나. 국외 개최 학술헌대회에서 구두로 발표한 논문 : 100,000원

다. 국외 SCI급 미등재지에 게재한 논문 : 100,000원

※ 우수논문 장려금 지원은 1인 연 1회에 한하며 2인 이상 공동게재하거나 구두로 발표한 경우에는 신청자 대표에게 지급함.

